

## 『배움. 나눔.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』

가정 통 신 문

- 발송일 2025.5.30.
- 발송처 군산동원중학교장

## 제목

## 보건교사 부재 시 상비약 지참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혈 제23조 제4항에 따라, <u>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</u> <u>제한적</u> <u>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.</u>

보건교사 부재 시 약품 사용에 대해 안내를 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〈전달 사항〉

- ① 일반 교사(직원)의 경우 의약외품(밴드, 소독제, 일부 연교제 등)만 학생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②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(현장학습, 체육활동 등) 시, 상비약(예: 두통약, 소학제, 알레르기 약 등)은 개인별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.
- ③ 보건교사가 부재(출장, 연수 등)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자주 먹거나,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동안 편의상 보건교사 부재 시 이루어진 투약 관행으로 인해,

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은 약물 오남용 사례가 발생 위험, 약물 상호작용 문제, 알러지 발생 위험 등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,

결정된 본 지침에

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, 5, 30,

군 산 동 원 중 학 교



이명회